**문항1. 정보수집 정책의 관점에서 개인의 동의를 얻는 2가지 방식이 무엇인지 명칭을 작성하고,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8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joNo=007500000&languageType=KO&paras=1)제1항제1호).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joNo=001600000&languageType=KO&paras=1)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joNo=001600000&languageType=KO&paras=1)제2항).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제3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0%84%EC%9E%90%EB%AC%B8%EC%84%9C+%EB%B0%8F+%EC%A0%84%EC%9E%90%EA%B1%B0%EB%9E%98+%EA%B8%B0%EB%B3%B8%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joNo=002200000&languageType=KO&paras=1)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joNo=001600000&languageType=KO&paras=1)제3항).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joNo=007500000&languageType=KO&paras=1)제2항제2호).

 **문항2. 디지털 발자국의 의미와,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2가지 기능의 명칭을 작성하고,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42점)**

디지털 발자국이란,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남긴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말한다. '디지털 흔적'이라고도 한다.

**디지털 세탁소**

철없는 시절에 올린 허세글이나 비방글, SNS에 올린 옛 애인과의 사진, 혹은 타인에 의한 악성댓글이나 신상털기 자료가 온라인상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대인관계에서 피해를 보거나,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힘들만큼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 퍼져버린 자료를 개인이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대신 찾아서 삭제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디지털 세탁소’ 또는 ‘온라인 평판관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 개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해 부정적인 보도내용이나 악성 댓글을 삭제해주는 기업용 서비스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탁소는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을 지워줌으로써 ‘잊혀질 권리’를 실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범죄자의 과거 행적 삭제로 인하여 유권자나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두 권리의 충돌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고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라인상에 남긴 게시글, 블로그 포스팅, SNS에 올린 사진 등의 흔적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며, 디지털 장의사란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산을 삭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유가족의 의뢰로 고인의 정보를 삭제해주기도 하지만, 의뢰인이 직접 사후에 삭제할 기록과 유족에게 남겨줄 기록을 구분해놓으면 의뢰인이 죽은 뒤에 요청에 따라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2013년 4월 브라질 법원에서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과 추모페이지 삭제를 명령하였고, 이러한 판례에서 알 수 있듯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삭제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이며 관련 서비스들이 성업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디지털 장의사를 미래 유망직종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가족이 의뢰하는 경우, 고인의 개인정보 삭제 권한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며, 불법성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